

제305회 정례회

2011. 12. 19(월)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

건 설 소 방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나시찬

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임헌경 의원 외 6명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1년 12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12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도시기반시설, 가로시설물의 사업계획 수립시 창의성과 예술성, 미적 감각이 가미된 공공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가. 기본원칙, 대상기관,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, 제3조)
- 나. 기본계획 수립, 시행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다. 시범사업 시행 및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- 라.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)

5. 검토내용

## 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도시기반시설, 가로시설물에 심미적, 상징적, 기능적 요소가 가미된 공공디자인을 도입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.

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도지사의 사무집행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 또는 적극적인 개입을 규정하는 조항이 없으며,
- 업무주관 부서인 균형건설국 건축디자인과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, 입법예고(2011.11.10 ~ 11.29)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음.
- 상위법령에 직접적인 위임근거 법령은 없으나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,
-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,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
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.
- 조문의 내용은 「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」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 6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검토한 바,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간결하게 발의되었으므로,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